



## **Singapore Crypto Regulation:** Tightened but still greenlight with regulatory clarity

---

Tammy Ahn  
Managing Partner, LodestarT  
March 16, 2021



## AGENDA

**01** 디지털 토큰에 관한 규제기관은 어디인가요?

**02** 디지털 토큰 관련 사업 시 적용되는 법령이나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?

---

**03** 우리 회사 디지털 토큰은 자본시장상품일까요?

**04** 자본시장상품일 경우 의무 사항이 무엇인지요?

**05** 자본시장 규제 관련 면제 요건이 있는 지요?

---

**06** 디지털 토큰 사업자로서 어떤 라이선스를 받아 하는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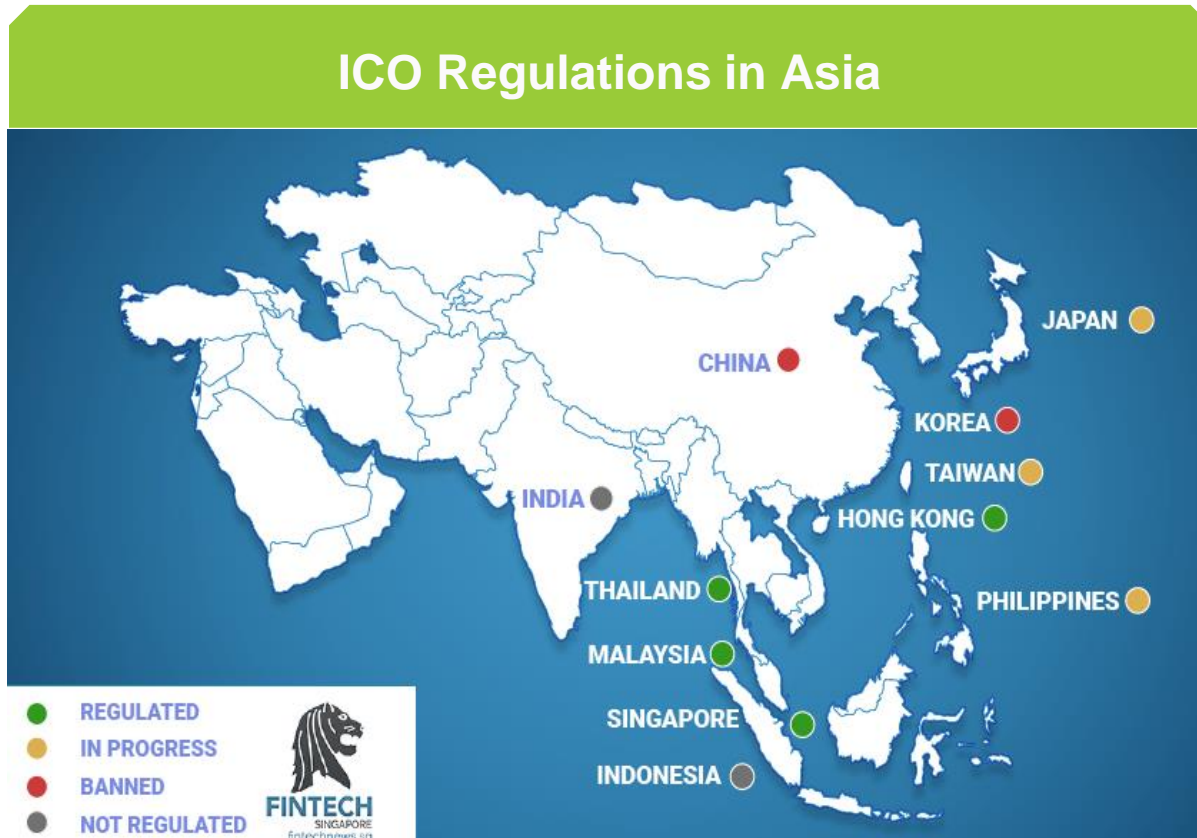
**07** 라이선스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?

---

**08** 디지털 토큰 관련한 세금이 궁금해요

싱가폴의 ICO 동향

# 토큰 발행 시장을 선도



Source: Fintech News Singapore

### Top Countries by the number of ICOs

#1 USA	717
#2 Singapore	587
#3 UK	514
#4 Russia	328
#5 Estonia	300

Source: ICO Bench

### Top Countries by raised funds

#1 USA	\$7.3B
#2 Singapore	\$2.5B
#3 British Virgin Islands	\$2.4B
#4 Switzerland	\$1.8B
#5 UK	\$1.5B

디지털 토큰에 관한 규제기관

# 싱가폴 통화청 (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, “MAS”)



Monetary Authority  
of Singapore

## Our Mission

To promote sustained non-inflationary economic growth, and a sound and progressive financial centre.

Promoting Economic Growth & Financial Stability

### Monetary Policy

Find out about how MAS conducts Monetary Policy.

### Central Bank Operations

Learn about the functions MAS performs as a Central Bank.

### Macroprudential Policy

Find out about MAS' approach to macroprudential policy.

Maintaining a Robust, Resilient & Trusted Financial Centre

### Regulation and Supervision

Find out about regulations under MAS and our approach to supervision.

### Enforcement

View formal regulatory and enforcement actions taken by MAS for breaches of laws and regulations.

### Anti-Money Laundering

Find out more about MAS' regime to combat financial crime.

Developing an Innovative & Inclusive Financial Centre

### FinTech and Innovation

Get the latest on our FinTech strategy and initiatives.

### Develop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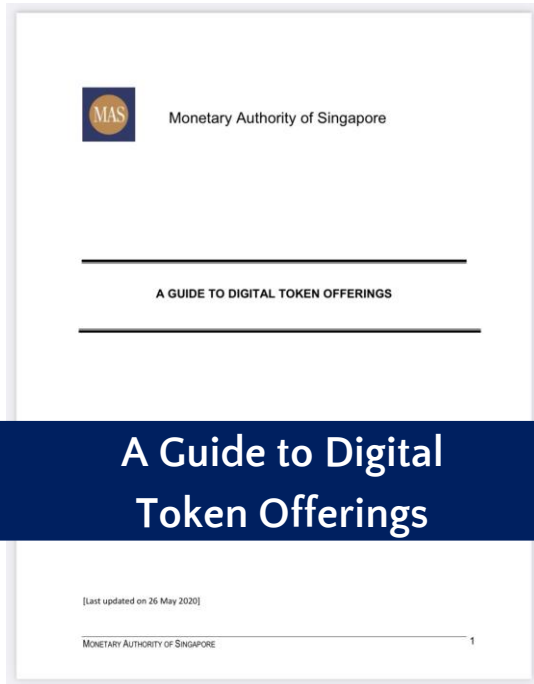
Find out about the support and grants available for the development of Singapore's financial sector.

### Jobs and Skill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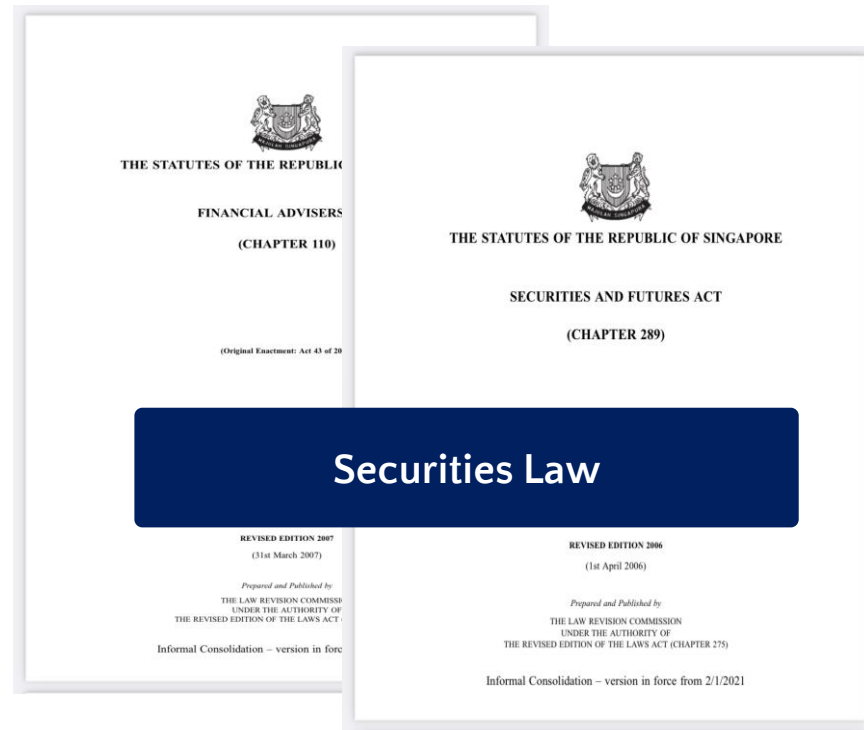
Learn about initiatives to develop expertise and grow the financial sector talent pool.

디지털 토큰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

## 토큰 사업자 및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



###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



### Securities Law



### Payment Services Act

증권선물법 상 자본시장상품만 규제, 유틸리티 토큰 규제 X  
자본시장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인허가 없음

디지털 지급 토큰 (DPT) 서비스  
라이선스 및 규제를 입법화

## 증권선물법 상의 자본시장상품 해당 시

아래와 같은 경우 “자본시장상품” (Capital Market Products)에 해당하며, 증권선물법의 규제를 받음

1	<b>주식</b> Share	디지털 토큰이 기업 소유권 부여, 혹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표상 시, 기업내 디지털 토큰 보유자들 간의 상호약정을 표상하는 경우
2	<b>채무증권</b> Debenture	토큰 보유자가 토큰 발행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혹은 금전 대여 의 약속을 한 경우
3	<b>사업신탁</b> Unit in a business trust	토큰이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거나, 부여 된 소유권을 표상할 경우
4	<b>증권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</b> Securities-based derivatives contract	토큰이 주식, 채무증권, 또는 사업 신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에 해당할 경우
5	<b>집합투자상품 (“CIS”)</b> Unit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	토큰이 집합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집합투자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표상하는 경우

## 자본시장상품 시 의무 사항 및 면제 요건

### 의무사항

### 면제요건

투자설명서 Prospectus	증권, 증권형 파생계약 혹은 집합투자상품 등으로 간주시 투자설명서 발행 의무	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시 투자설명서 발부 및 승인 요건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규모 (사적관계자) (12개월 이내, \$5백만불 이하)</li> <li>• 사모 (12 개월이내, 50 인 이하)</li> <li>• 기관투자자</li> <li>• 적격투자자에 대한 모집</li> </ul> 단, 면제 시에 광고 규제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
MAS 등록	투자설명서를 MAS에 제출	
집합투자증권 시	MAS 인허가를 받아야 함	
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 Capital Market Services Licence	금융상품에 대한 인수 및 매수에 대해 청약과 권유하는 행위 시 CMS 라이선스 취득해야 함	

## 결제서비스법 (PS Act) 입법화 과정

<p><b>14 Jan 2019</b></p> <p><b>Payment Services Act 2019 (PS Act) 의회 통과</b></p> <p>크립토를 “디지털 결제 토큰 ” 이라 정의하고, 라이선스제도 신설</p>	<p><b>28 Jan 2020</b></p> <p>PS Act 시행</p> <p>크립토 거래소 및 사업자는 MA 에 3월 1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</p>	<p><b>24 June 2020</b></p> <p>23세 싱가포르 여성이 라이선스 없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됨. 첫 PS Act 위반 케이스</p>	<p><b>2 Nov 2020</b></p> <p><b>Payment Services (Amendment) Bill (개정안) 의회 상정</b></p>
<p><b>5 Dec 2019</b></p> <p>MAS PSN02 발간</p> <p>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AML 요건을 포함</p>	<p><b>16 Mar 2020</b></p> <p>MAS 는 AML/CFT 의무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</p>	<p><b>21 Jul 2020</b></p> <p>MAS 에서 <b>Consultation Paper</b> 발간</p> <p>FATF 기준에 부합하고,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까지 확대</p>	<p><b>4 Jan 2021</b></p> <p><b>개정안 의회 통과</b></p> <p>크로스보더 송금의 정의를 확장함</p>



## 결제서비스 법안 (PS Act) 의미와 영향

### 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 통합

- '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' (Payment Systems Act 2006) 과 '환전 및 송금 사업에 관한 법률' (Money-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es Act 1979)을 통합

### 디지털 결제 토큰의 제도권 편입

- 현금 뿐 아니라 DPT까지 포함하며, 7가지의 결제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는 라인선스를 취득하여야 함 (PSA 2019 제6조 제4항).

### 지정제도와 면허제도 병행

- 기존 '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 (Payment Systems Act 2006)의 지정제도 유지하고, 새로운 결제시스템 등장으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라이선스 체제를 새로이 추가.

### 활동과 규모에 따른 탄력적 규제

- 모듈화된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비즈니스 활동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 적용

### 세이프가드 (safeguard) 강화

- DTP 발행기관은 물론 중개·거래하는 플랫폼 사업자까지 규제의 영역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. '자금세탁 방지(Anti-Money Laundering ; AML)'와 '테러자금 조달 방지(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; CFT)' 충족 요건

##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결제서비스 종류

1	계좌 개설 서비스 Account Issuance	결제 계좌나 결제 계좌를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, 예를 들면 전자지갑 (선불카드를 포함하는) 혹은 비은행권 카드 개설
2	국내 송금 서비스 Domestic Money Transfers	국내 송금 서비스로 페이먼트 게이트 (payment gateway services) 및 결제 키오스크 (payment kiosk services) 서비스 포함
3	역외 송금 서비스 Cross-border Money Transfers	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
4	가맹점 매입 서비스 Merchant Acquisition	가맹점이 현금을 지급 결제하는 프로세스를 서비스
5	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E-Money Issuance	싱가폴에서 사용자들이 e-money 로 결제 및 송금을 가능하는 서비스
6	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 Digital Payment Tokens	가상 화폐를 사고 팔거나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
7	환전 서비스 Money Changing	외환을 사고 판매

# 라이선스 구분

PSA 규율 대상 중  
환전만 가능



**환전 사업자**  
Money-changer (“MC”) licence

- 환전 외에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일반결제기관 라이선스 또는 주요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. (제6조 4항 (b)호)

PSA 규율 대상  
행위 모두 가능



**일반 결제기관**  
Standard Payment Institution (“SPI”) licence

- 메이저 지급기관보다 규제가 약하지만 거래량 및 유동성 등의 제한. (월평균 거래액 \$3 million 이하, 일평균 유동량이 \$5 million 미만)
- 일반결제기관면허 소지자는 제16조 제3항 등의 공개요건을 충족해야 하고,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를 부담하며, 기술위험을 관리해야 하며, 사업자 사정변경시 라이선스의 변경을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며, CEO 등 주요보직자 임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주식보유량의 통제를 받음.

**메이저 결제기관**  
Major Payment Institution (“MPI”) licence

- 일평균 거래량이 \$3 million 초과하거나, 일평균 유동량 \$5 million 일 경우 더 많은 규제 적용
- 일반지급기관 대비 추가로 고객에게 받은 자금에 대한 보호(제23조), e-머니를 포함한 개인계좌 개설 금지 (제 24조) 등 e-머니에 대한 규제 적용.

## PS Act 개정 법안

2020년 11월 2일, 결제 서비스 수정 법안(Bill) 이 상정되었고, 2021년 1월 4일 의회에서 통과.

자금세탁방지기구 (“FATF”) 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(“VASPs”) 에 대한 ‘자금세방지 및 탈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권고사항’ 에 부합하고, 규제 당국이 DPT 섹터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MAS가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권한 강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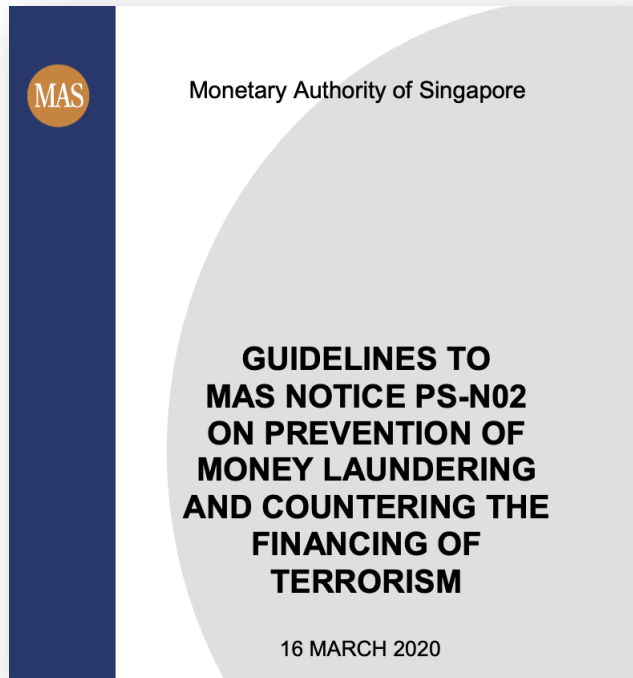
### (1) DPT 서비스의 정의 확장

- DPTs 의 이동: DPTs 를 이동시키거나 이전을 어렌지 하는 서비스
- DPT 커스터디 월렛 서비스 제공: DPT를 보관/관리하거나 혹은 프라이빗키 및 월렛 등 DPT 기기들을 관리
- DPT 서비스 제공자가 DPT 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DPTs 교환을 중개

### 2)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의 범위를 싱가포르에서 수취하지 않는 크로스보더 송금 서비스까지 확대

- 기존 법은 싱가포르에는 수취하는 크로스보더 송금만 규제를 받았음.
- 개정안에서는 자금이 싱가포르에서 수취하지 않더라도, 다른 나라 간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AML/CFT 위험도 인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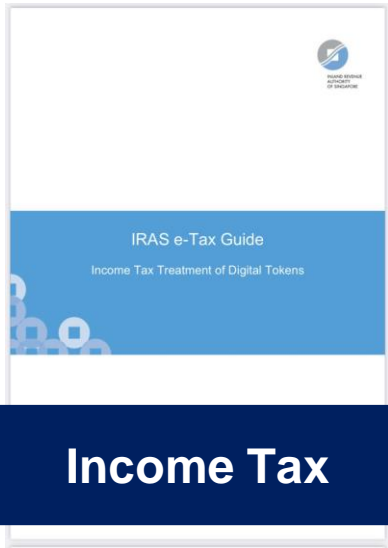
## DP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AML/CFT 의무 사항



거래소와 같은 DPT서비스 제공자들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의 AML/CFT 의무조항을 준수하여야 함

- 위험 평가와 위험 방지 대책
- 고객 실사 (CDD)
- 제 3자 의존 (제 3자에게 고객 확인 의존)
- 대리 계좌 및 송금
- 기록 관리
- 의심 거래 신고
- 내부 정책, 통제, 감사와 교육 등

# 디지털 토큰에 대한 소득세 가이드



1	<b>결제 토큰</b> Payment toke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결제의 수단으로만 사용 (비트코인 등)</li> <li>• 무형자산 (intangible property) 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령 시 물물교환으로 인식</li> <li>•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는 거래가 수행되는 시점, 즉 <u>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 기준으로 인식하며, 환율은 합리적이고, 확인가능해야 함</u> (예, Coinbase 및 Binance 의 평균 가격 등)</li> <li>• 결제토큰의 가치가 상승 혹은 하락하여, 회계 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미실현 이익/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.</li> <li>• 사업자가 크립토 트레이딩 회사인 경우 결제토큰의 처분 시 과세 기준이며, IRAS 는 선입선출 (FIFO) 혹은 가중평균 비용 산출 기준을 용납.</li> </ul>
2	<b>유틸리티 토큰</b> Utility toke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큰 보유자에게 서비스 이용 혹은 혜택을 받는 권리를 줌.</li> <li>•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, 바우처 (향후 토큰 발행사의 서비스 사용)나 열쇠(토큰 발생사의 플랫폼에 액세스 가능)</li> <li>•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 시 사용자는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, 과표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</li> </ul>
3	<b>증권형 토큰</b> Security toke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큰 보유자에게 기초자산에 대한 분할된 소유권이나 권리를 부여하며, 일정 부분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 토큰</li> <li>• 증권형 토큰의 수익에 따라 (이자, 배당, 혹은 다른 분배 등) 과세 여부 결정</li> </ul>

# ICO 수입에 대한 과세 방안

	결제 토큰 발행 ICO 수입	유틸리티 토큰 발행 ICO 수입	증권형 토큰 발행 ICO 수입
과세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트레이딩 사업자로서 트레이딩 스톡인 결제토큰 ICO 수익은 과세 대상</li> <li>• 드문 경우이기에 과세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조사가 요구될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행자가 미래에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연 수익</li> <li>• 매출로서 과세 대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적인 권리와 경제적인 이익을 부여</li> <li>• 증권형 토큰의 ICO 수익은 자본으로 인식되어 비과세</li> </ul>
과세 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행 시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비스 런칭 혹은 상품이 전달 시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행사는 비과세</li> <li>• 배당, 이자 혹은 기타 분배 시 투자자에게 일반적인 소득세 및 보유세 적용</li> </ul>

## 기타 토큰 관련 과세 가이드라인

### ICO 실패

- 서비스가 예정대로 출시하지 않는 등 ICO가 실패하는 경우에는, ICO로 수령한 금원을 환불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. (미환불 시 토큰 종류에 따라 과세)

### 마이닝한 토큰의 처분

- 토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마이닝 사업자는 과세 대상으로 토큰의 처분 시 과세. 마이닝 기계 구입 등의 비용은 경비로 인정 가능.
- 개인이 마이닝한 토큰을 처분할 경우 취미나 보유 혹은 장기적인 투자인 경우 비과세. 직업적으로 마이닝을 하며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과세.

### 에어드랍

- 에어드랍을 통해 받은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한 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.

### 하드 포크

-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과세 대상 아니지만, 토큰의 처분 시 이익은 과세됨

- 납세자는 거래에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하며 IRAS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. 제출 자료들은 거래일, 판매 혹은 수취한 토큰의 개수, 거래 시 가격, 사용된 환율, 거래의 목적, 거래 당사사들에 대한 정보, ICO 상세 내역 및 사업 경비 등 정보를 포함함



디지털 토큰 관련 세제

DPT의 GST\* 과세 안: 2020년 1월 1일 전 vs. 2020년 1월 1일 후

	2020년 1월 1일 전	2020년 1월 1일 후
결제를 위해 DPT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 대상인 서비스 공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화와 서비스 공급으로 보지 않음</li> </ul>
DPT를 법정 화폐나 다른 DPT로 교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 (표준율 / 영세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GST 면세 (해외 거주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GST 등록 사업자에게 제공 시 영세율 적용)</li> </ul>
DPT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 (표준율 / 영세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GST 면세 (해외 거주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GST 등록 사업자에게 제공 시 영세율 적용)</li> </ul>
중개자의 서비스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세</li> </ul>
마이닝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별 가능한 상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한 해당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별 가능한 상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한 해당 없음</li> </ul>

\* GST(Goods and Services Tax)는 싱가포르 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GST 등록기업으로 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면 현재 표준세율은 7%

## Key Takeaways

# 싱가폴의 규제 환경

- 1 규제 당국
- 2 크립토 관련 법안
- 3 가상자산사업자 명칭
- 4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
- 5 라이선스 종류
- 6 디지털 토큰 종류

- 싱가포르 통화청 (MAS)
- 결제서비스법 (PS Act)
- 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 제공자 (DPT Service Providers)
- 계좌 개설 서비스 / 국내 송금 서비스 / 역외 송금 서비스 / 가맹점 매입 서비스 /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/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/ 환전 서비스
- 환전사업자 / 일반 결제기관 / 메이저결제기관
- 결제 토큰 / 유틸리티 토큰 / 증권형 토큰

## TAMMY (TAEHYON) AHN

- LODESTART, an independent research platform to bridge between startups/private companies and cross-border investors, Cofounder
- JENGA K, a Singapore based blockchain consulting firm, Cofounder
- BUSAN METROPOLITAN CITY, Blockchain Policy advisor
- Ping An Fintech Cloud, Mentor
- R3 Venture Development, Mentor
- WORLD SMART CITIES FORUM, Advisor
- CITIBANK ASIA & EMEA, Investment Strategist
- Wharton Business School (MBA), Seoul National University (BE)

### ADDRESS

3 Fraser Street, Duo Tower #05-21, Singapore 189352

### CONTACT

 (+65) 9169-9145



[Tammy.ahn@lodestart.ai](mailto:Tammy.ahn@lodestart.ai)